

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

2001. 8. 23.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1년 8월 9일

○ 회부일자 : 2001년 8월 10일

다. 상정일자 :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1. 8. 22 :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 
심의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증평출장소장 김 재 욱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조문의 정비와 2001년 증평출장소 민간위탁 추진시설인 문화회관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골자

- 증평문화회관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단체 또는 문예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제4조)
- 위·수탁기간 명시 및 수탁운영자의 의무를 정함 (제4조의2, 제4조의3)
- 수탁운영에 대한 지도·감독 규정을 신설함.(제4조의4)
- 직제개편으로 증평문화회관의 관장을 “기획실장”에서 ⇒ “총무과장”으로 변경함.(제5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-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조항의 정비와 민간위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,

주요내용으로는

증평 문화회관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

위·수탁기간의 명시와 수탁운영자의 의무, 수탁운영에 대한 지도·감독 규정을 신설하고,

직제개편으로 기획실의 폐지에 따라 증평 문화회관의 관장을 “기획실장”에서 “총무과장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,

-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 
동 조례 개정을 위하여 적용한 법규를 보면 국유재산법 제21조의 2(국유재산관리의 위탁) 및 동법 시행령을 적용하였으나, 이는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의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겠으며,  
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위탁은 지방재정법 제109조(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)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,
-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방법 및 앞으로의 계획과
- 문화회관의 관리운영을 당초 직영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관리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직영관리에 필요한 동 조례 제5조(관리부서)의 문화회관에 관장과 직원을 두도록 한 규정 및 제6조(관장의 업무)를 삭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**<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>**

제4조(관리) 회관의 운영은 증평출장소 직영으로 한다.

제5조(관리부서) ①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기획실장이 업무를 겸직한다.

②회관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관장의 업무) 관장은 출장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#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